

## 국제중재인의 자격과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Qualification and Training Plans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or\*\*

박종삼\*\*\*  
Jong-Sam Park

### 〈목 차〉

- I. 서 론
- II. 국제중재인의 자격 및 역할
- III. 국제중재인의 양성방안
- IV.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

**주제어** : 중재, 국제중재인, 중재인 역할, 중재인 자격, 중재인 양성방안

\* 본 논문은 2014년 4월 19일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으로서 이 후 수정·보완된 논문이고, 무엇보다 본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의미 있고 유익한 지적과 방향을 제시해 주신 학술대회 사회자, 토론자와 논문심사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본 논문은 2015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따라 수행된 연구임.

\*\*\* 남서울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jspark@nsu.ac.kr](mailto:jspark@nsu.ac.kr)

## I. 서론

오늘날 글로벌통상환경하에서 국제거래의 규모, 범위와 역량이 확대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제간의 교역증대, 다수의 FTA 체결 등으로 무역, 투자 증대에 따라 국제분쟁은 갈수록 증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상사분쟁의 해결방법과 절차는 국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낳고 있다.

국제거래로 생긴 상사분쟁의 해결방법으로는 크게 소송(Litigation)과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가 있으며, 여기서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란 전통적인 재판절차에 대체되는 분쟁해결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ADR의 대표적인 것은 화해(amicable settlement), 알선(intercession),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 등이 있고, 그 중 국제중재제도가 상사분쟁의 효율적인 해결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흔히, 중재는 중재인으로 시작해서 중재인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재에 있어 중재인은 중재판정을 내리는 권한을 갖고 있어 어떤 중재에서도 중재의 승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좋은 중재는 좋은 중재인이다”<sup>1)</sup> 및 “중재는 중재인과 같다”<sup>2)</sup>라는 말과 같이 중재인의 능력, 전문성 및 공정성이 중재절차의 근간이 되므로, 중재인 또는 중재판정부 구성은 국제중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sup>3)</sup>. 그러므로 당사자들은 국제중재인의 자격과 자질 및 권한 등은 분쟁해결과정, 중재판정 자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심한 검토와 각별한 주의를 한 후 중재인의 선정에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sup>4)</sup>

국제중재제도가 상사분쟁사건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제중재인의 자격과 역할 등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하고 적절한 국제중재인의 선정과 양성방안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인 검토가 요구 된다고 본다.<sup>5)</sup>

1) Martin Domke, Domke on Commercial Arbitration, The Law and Practice of Commercial Arbitration, Callaghan & Company, 1984, p.301.

2) Vicente Marotta Rangel, "Brazil",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Vol.III. ed. Pieter Sanders, International Council for Commercial Arbitration, Kluwer, 1978, p.31.

3) Wendy Miles, "Practical Issues for Appointment of Arbitrators-Lawyer vs Non-Lawyer and Sole Arbitrators vs Panel of Three(or More)", *Journal of Arbitration*, Vol.20, No.3, 2003, p.219.

4) Wendy Miles. "International Arbitrator Appointment", *Dispute Resolution Journal*, August/October, 2002, p.37.(신군재,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인선정 방식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9권3호, 한국중재학회, 2009.12, p.142)

5) 우리나라의 국제중재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엄청난 양적 및 질적 발전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근래 대한상사중재원은 취급한 중재사건 기준으로 세계 5위권에 자리하고 있고, 국제중재사건 기준으로 7-8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명단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36명이나 포함되어 있고, 중재인으로 위촉되고자 하는 외국 중재인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국제중재인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로써 국제중재인의 의미, 자격, 역할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어, 국제중재인의 양성방안 등을 검토하여 국제거래의 교역확대와 국제중재제도의 활성화를 꾀하는데 본고의 목적을 두고 있다.

## Ⅱ . 국제중재인의 자격 및 역할

### 1. 국제중재인 의미

우선, 국제중재는 중재합의(또는 중재계약)상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영업소 또는 거주지가<sup>6)</sup> 대한민국 밖 국외에 있다거나, 또는 중재합의에서의 중재지가 대한민국 밖 외국으로 지정된 경우는 의미한다. 우리나라 중재법에는 국내중재와 국제중재의 구별을 두고 있지 않는데 국제중재규칙에서 이를 명확히 한 데 큰 의의가 있다.<sup>7)</sup>

이어, 국제중재인이란 일반적으로 사인(私人)간에 생긴 국제상사분쟁을 법관이 아닌 제3자에게 의뢰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일반규칙이다. 일부 사법제도는 법적 능력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일반규칙은 국제상사중재의 관행에서 준수되어야 한다.<sup>8)</sup>

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 국제중재인은 국제무역거래에 따른 법리와 상 관행을 충분히 인식하고 국제무역관계분야와 상이한 전통, 다른 국가 사람들의 목표와 기대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 점에서 경험 많은 중재인은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따른 법리와 분쟁당사국의 상 관행,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노력해야 한다. 중재인의 국적은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단독중재인이나 중재판정부에 속한 대다수 중재인이 타방 당사자와 동일한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긴장을 야기하고 불공평과 무의식중에 편견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 분쟁의 특성상 중재인의 국적을 문제 삼고 있는 중재법이나 중재규칙은 거의 없다.<sup>9)</sup>

6) 영업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를 말하고 거주지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곳을 말한다.

7) 김연호, “국제중재규칙의 활용방안과 한국의 국제중재제도의 발전”, 중재, 제336호, 대한상사중재원 2011, p.7.

8) 김용일·하명근,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인 선정에 관한 비교연구”, 통상정보연구, 제8권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6, pp.214-215.

9) UNCITRAL 모델중재법은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누구도 국적을 이유로 중재인으로서 행동하는 것을 배제 당하지 아니 한다”(제11조1항)고 규정하여 국내 입법가들이 이 법을 수용하여 자국 중재법을 제정할 때 외국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ICC중재규칙(제9조5항)과 LCIA중재규칙(제6조1항)은 원칙적으로 양당사자 및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들과 다른 국적을 가진 단독중재인 또는 의장중재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의장중재인이 이중국적을 가진 경우 국적의 하나가 분쟁당사자의 국적과 동일한 경우에는 중재인을 기피하고 있다. 한국중재법도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다(제12조1항)고 규정하여 중재인의 국적에 따른 편견이나 분쟁당사국의 불신을 없애고 있다.(홍성규, 「국제상사중재」, 두남출판사, 2004, p.317)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중재인은 불가피하게 자신이 받은 교육과 자신이 성장한 사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한편 경험 많은 국제중재인은 이 점에서 자신의 문체점을 인식하고, 분쟁당사자의 행위를 잘 이해하기 위하여 국가적 혹은 문화적 차이로부터 융통성 있는 지식을 가지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sup>10)</sup>

## 2. 국제중재인의 자격

일반적으로 국제중재인의 자격은 중재의 결과에 관하여 법률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중재인이 될 수 없고, 중재인은 국적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자유로이 선정되어 중재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sup>11)</sup>

중재인으로서의 능력은 일반적으로 그가 지명된 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추면 된다. 중재인은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국적에 상관없이 선정될 수 있고<sup>12)</sup>, 변호사 기타 전문가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국제 중재법이나 각국의 중재법에서는 중재인의 자격요건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sup>13)</sup>.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중재인은 자신들의 분야에서 평판과 전문성, 성실성 및 분쟁해결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sup>14)</sup>. 우리나라의 경우 중재인 자격요건에 대하여, 구 중재법에서는 중재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해두었으나<sup>15)</sup>, 현행 중재법에서는 중재인의 자격요건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중재법 제12조(중재인의 선정) 제1항에서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중재인의 선정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오히려, 동법 제13조(중재인에 대한 기피 사유)에서 중재인 취임수락을 요청받은 사람 또는 중재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살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

10) A. Redfern & M. Hunter, op. cit., p.216-217.

11) 박중삼 외, 「최신 상사중재론」, 대한중재인협회, 2001.12, pp.118-119;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에서는 제19조에서 중재인의 자격을 “중재의 결과에 관하여 법률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중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5조에서 “[...]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관하여 정당한 의문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이를 모두 사무국에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중재인의 자격으로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지는 않고, 법률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을 전제로 공정성, 독립성 그리고 고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제중재규칙 역시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국내중재규칙 제19조와 제25조와 유사한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12) 한국중재법 제12조 제1항.

13) UNCITRAL 모델법, ICSID, ICC Rules 등

14) Elizabeth Champnoi, "The Arbitrator Selection Process and New Ethical Standards", *The CPA Journal*, December 2005, p.60.

15) 구 중재법 제5조에서는 중재인의 결격사유로서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공민권의 제한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자 등으로 열거하였다.

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6)</sup> 따라서 우리 법률은 중재인의 자격에 대하여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관련 중재사건에 대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에 정당한 의문을 야기할 만한 사정 및 이해관계만 없으면 중재인으로 선정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sup>17)</sup>

중재인은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선정된다. 당사자는 중재계약에 중재인 선정 방법을 합의하여, 이 방법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sup>18)</sup> 또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sup>19)</sup> 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양 당사자에 의해 선정된 두 명의 중재인이 전문가이고 변호사가 그 중재사건의 의장이 되는 것이 효율적이다.<sup>20)</sup> 두 명의 중재인은 중재판정부에 기술적인 전문성(technical expertise)을 제공하며, 의장중재인(chairman)은 중재절차가 정확히 이행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관련 중재인 선정에 대해, 예를 들어 그의 명성, 솔직함, 판단력, 국적, 전문적 경험, 유용성(availability)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sup>21)</sup>

중재인에게는 중재인 스스로가 그 중재권한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 권한을 심사할 권한과 중재절차진행권한 및 중재판정권한이 중재인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중재인이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하며, 양 당사자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중재인의 자격 요건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중재인이 중재과정을 통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주요 의무로는<sup>22)</sup> 주의의무(duty of care), 공정의무(duty of acting fairly and judicially), 성실의무(duty of acting with due diligence) 그리고 비밀준수의무(duty of confidentiality)가 있다고 논의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당해 중재인이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거나 해당 중재판정은 취소되거나 승인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제중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이익충돌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자기 스스로 자

16)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은 2015. 2. 10. 현재 301명의 국제중재인 명단을 별도로 보유·운영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국제중재인의 자격요건은 국내중재인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어학능력과 중재사건 진행 능력이 검증된 중재인들에 한해 국제중재인으로 위촉하고 있다. 국제중재인과 국내중재인 명부에 동시에 등재된 중재인은 현재 184명이다.

17) 참고로, 대한상사중재원은 매년 신규중재인을 3년의 임기로 위촉하고 있는데, 신규중재인의 자격요건으로서, 법조계의 경우에는 법조경력 10년 이상, 법학박사 또는 외국인변호사 자격 취득자로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고, 실업계의 경우에는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상장기업은 3년 이상, 비상장기업은 5년 이상 임원으로 근무하고, 전문 직종에 15년 이상 또는 분야별 최상위급 자격 취득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학계의 경우에는 대학교수로 5년 이상, 박사학위자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공공단체 및 기타 분야의 경우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등 전문자격 취득자로서 5년 이상 현직에서 근무한 자로 제한하고 있고, 주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변호사 자격소지자, 교수, 주한 외국상사 내지 무역유관기관의 임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한 자 또는 전문 직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제한하고 있고, 국외 거주 중재인의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의 기준에 준하여 위촉하고 있다.

18) 변호사에는 사무변호사(solicitors), 법정변호사(barristers), 회사변호사(company lawyers), 학자(academics)를 포함한다.

19) 예를 들어 전문가(experts)에는 기술자(engineers), 소프트웨어전문가(software specialists), 건축전문가(building experts) 등이 있다.

20) H. van Houtte, op. cit., p.401.

21) A. de Fina, "The party appointed arbitrator in international arbitrations-role and selection", 1990, 15 Arb. Int. 381.

22) 홍성규, 앞의 책, pp.373-374.

기에 대한 심사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제중재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첫 번째 관건이 될 것이다.<sup>23)</sup>

즉, 자신이 국제중재인으로서 국제중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이다. 국제중재에 있어 중재인으로 지명 될 경우, 이를 수락할 것인지의 여부에 앞서 과연 자신이 국제중재인으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검토해야 하는 바, 이때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우선 중재인에게는 법률적 지식과 전문적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국제교역 등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보장될 수 있으며 또한 법률적인 지식이 동반되어야만 중재절차의 진행이나 중재절차에서 내리게 되는 판정의 효율성이 확보되게 된다. 또한 국제중재인은 중재절차 등 분쟁해결에 관한 경험 이외 예도 대체로 해당 분야에 대한 법률적 또는 기술적 전문성, 언어적 능력, 소재지,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 당해 분쟁을 검토할 여력이 있는지 여부 등 자격구비가 고려되어야 한다.<sup>24)</sup>

한편, 해외법규에서 규정하는 중재인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총 33개국<sup>25)</sup>의 중재법 또는 (중재법이 민사소송법 내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들을 조사하고 이들 법률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26)</sup>

### (1) 중재인의 자격요건에 제한이 없거나 낮은 국가

중재인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33개국의 관련 법률을 조사해본 결과,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코스타리카, 잉글랜드 및 웨일즈, 프랑스, 독일, 일본, 말레이시아, 페루, 루마니아, 태국,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4개국의 경우에는 중재인의 자격요건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중재인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은 존재하지만 특별한 제한은 없는 경우로는 벨기에<sup>27)</sup>, 인도<sup>28)</sup>, 브라질<sup>29)</sup>, 네덜란드<sup>30)</sup>, 뉴질랜드<sup>31)</sup>, 포르투갈<sup>32)</sup>, 러시아<sup>33)</sup>, 싱가포르<sup>34)</sup>, 터키<sup>35)</sup> 등이

23) 백윤재, “국제중재인의 바람직한 자세”, 중재, 제339호, 대한상사중재원, 2013, pp.12.-13.

24) 윤병철, 국제중재에서 중재인의 선임, 중재, 제319호, 대한상사중재원, 2006, pp.92-93.

25) 벨기에, 호주, 오스트리아, 브라질, 캐나다, 코스타리카, 잉글랜드와 웨일즈, 이집트,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스코틀랜드,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태국, 터키, UAE,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총 33개국.

26) 이하, 안건형, “비변호인 중재인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재연구, 제25권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5,3, pp.55-59.

27) 벨기에 재판에 관한 법률(judicial code) 1685조 (Article 1685)

“§1. 당사자 간 달리 합의가 없는 한, 어떠한 자도 국적을 이유로 중재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배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28) 인도 중재 및 조정에 관한 법률(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제11조

“(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어떤 국적의 자도 중재인이 될 수 있다.”

29) 브라질 중재법 제13조

“당사자의 신임을 얻고, 법률행위능력이 있는 모든 개인은 중재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30) 네덜란드 민사소송법 제1023조

“법률행위능력이 있는 자연인은 중재인으로 임명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 하지 않는 한, 국적을 이유로 금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재인의 자격에 대하여 엄격한 규정은 없지만 어느 정도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로는 이집트<sup>36)</sup>, 핀란드<sup>37)</sup>, 헝가리<sup>38)</sup>, 인도네시아<sup>39)</sup>, 이탈리아<sup>40)</sup>, 폴란드<sup>41)</sup>, 스코틀랜드<sup>42)</sup>, UAE<sup>43)</sup> 등이 있다.

- 31) 뉴질랜드 중재법 제11조  
“(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 하지 않는 한, 중재인으로 활동함에 있어 국적을 이유로 금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 32) 포르투갈 자발적 중재법(Voluntary Arbitration Law) 제9조.  
“1. 중재인은 완전한 법률행위능력이 있는 개인이어야 한다.  
2. 제10조 제6항(article 10, paragraph 6)과 당사자의 결정에 반하지 않는 한, 중재인으로 선임됨에 있어 국적을 이유로 금지되지 아니 한다.”
- 33) 러시아 국제중재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제11조.  
“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인으로 활동함에 있어 국적을 이유로 금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 34)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부속서(Schedule) 1 제11조.  
“(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인으로 활동함에 있어 국적을 이유로 금지되지 아니 한다.”
- 35) 터키 국제중재법 제7조.  
“B)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 하지 않는 한, 중재인의 선정에 있어 다음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1. 오직 실존하는 자(real persons)만이 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있다.”
- 36) 이집트 민사 및 상사 문제에 있어서의 중재에 관한 1994년 공표법[제27호] 제16조.  
(Article 16 Law No. 27/1994 Promulgating the Law Concerning Arbitration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1. 미성년자, 피후견인, 중범죄나 공정성에 반하는 범죄로 판결에 의해 권리를 박탈당한 자는 그 지위를 회복하지 못한 이상 중재인이 될 수 없다.  
2. 양당사자 사이에 달리 합의하거나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중재인은 주어진 성별이나 국적을 요구하지 아니 한다.”
- 37) 핀란드 중재법 제8조.  
“(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파산하지 않고 권한에 제한이 없는 어떠한 연령대의 사람도 중재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460/1999).  
(2) 핀란드 시민권자가 아닌 자도 핀란드 내에서 중재인으로 활동하는데 제한받지 아니 한다.”
- 38) 헝가리 중재에 관한 1994년 LXXI법(Act LXXI of 1994 on Arbitration) 제12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중재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  
a) 24세 이하의 자;  
b) 최종법원의 결정에 의해 공무가 금지된 자;  
c) 최종법원의 결정에 의해 피후견, 피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  
d) 최종법원의 결정에 의해 구금이 선고되어 범죄전과가 면제되기 전까지의 자”
- 39) 인도네시아 중재법 제12조.  
“1 중재인으로서 지명되어 선정될 수 있는 당사자는  
(a)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있을 것  
(b) 최소 35세 이상“
- 40) 이탈리아 민사소송법 제812조.  
“중재인은 이탈리아 인이나 외국인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무능력자,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자, 파산자, 공무가 금지된 자는 중재인이 될 수 없다.”
- 41) 폴란드 민사소송법 제1170조.  
“1. 완전한 법률행위능력이 있는 어떠한 국적의 자연인도 중재인이 될 수 있다.  
2. 판사는 중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은퇴한 판사는 포함되지 아니 한다.”
- 42) 스코틀랜드 중재법 부속서(Schedule) 1  
“규칙 3 오직 개인만이 중재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규칙 4 만일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인으로 활동할 자격이 주어지지 아니 한다:  
(a) 16세 이하;  
(b) 무능력자인 성인[무능력자인 성인에 관한 법(Adults with Incapacity (Scotland) Act 2000 (asp 4) section 1(6))의 의미를 포함한다.”  
중재법 제25조(중재인 또는 심판관으로 행동할 판사의 권한)  
“(1) 판사는 다음의 경우에만 중재인이나 심판관으로 행동할 수 있다.

## (2) 중재인 자격요건에 엄격한 규정이 있는 국가

중재법에서 중재인 자격요건에 대하여 엄격한 규정을 갖고 있는 국가로는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데, 중국의 경우 중재인의 자격요건을 중재위원회(arbitration commission)에 의하여 초빙되어야 하고, 법률 관련 지식뿐만 아니라 업무, 연구, 교육 등의 경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44)</sup>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는 중재인은 샤리아(Sharia) 법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최소 대학 학위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다.<sup>45)</sup>

이상에서 총 33개국의 중재법 또는 민사소송법(중재편) 등 중재에 대해 규율하는 관련 법규들을 면밀하게 검토해본 결과, 14개국의 관련 법률에서는 중재인의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었으며,<sup>46)</sup> 10개국의 관련 법률에서는 단지 중재인으로 활동함에 있어 국적을 이유로 금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거나,<sup>47)</sup> 성별로 인하여 차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해당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sup>48)</sup>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49)</sup>

(a) 판사가 판단하기에 중재에 회부된 분쟁이 상사적 성격을 갖는 경우

(b) 스코틀랜드 대법원장(Lord President)이 스코틀랜드 대법원(Court of Session) 업무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사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수권한 경우.

(2) 장관들이 명령에 의하여 정하는 액수의 보수는 그 판사가 중재인이나 심판관으로 행동하는 데 대한 보수로 대법원에서 지급한다.

(3) 스코틀랜드 중재규칙(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아우터 하우스(Outer House)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갖는 권한은 이너 하우스(Inner House)가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다(그리고 어떠한 사항에 관한 이너 하우스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a) 판사가 단독중재인이나 단독심판관으로 행동하는 것, 또는;

(b) 판사가 중재판정부의 일원이 되는 것.

(4) 본조에서

“판사”는 스코틀랜드 대법원의 판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스코틀랜드 대법원의 대법원장을 의미한다.”

43) UAE 민사소송법 제206조

“1. 미성년자, 파산자, 법적무능력자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박탈당하여 자격이 회복되지 않은 자는 중재인이 될 수 없다.”

44) 중국 중재법 제13조.

“① 중재위원회는 공정하고 정직한 자들 중에서 중재인을 초빙하여야 한다.

② 중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중재 업무 종사기간 8년 이상;

2. 변호사업무 종사기간 8년 이상;

3. 법관 임용기간 8년 이상;

4. 법률연구 및 교육에 종사하며 고급직함(高級職稱)을 가진 자;

5. 법률지식이 있고 경제무역 등 전문 업무에 종사하며 고급직함이 있거나 동등한 전문 수준에 이른 자.

③ 중재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중재인명부를 구비하여야 한다.”

45) 사우디아라비아 중재법 제14조.

“중재인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법률행위능력이 있을 것;

2. 행실이 올바를 것;

3. 이슬람법(Islamic Legislation) 또는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최소 대학 학위를 보유하고 있을 것.

그리고 만일 중재판정부가 2인 이상의 중재판정부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의장중재인이 상기 조건을 갖추면 충분하다.”

46)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코스타리카, 잉글랜드 및 웨일즈, 프랑스, 독일, 일본, 말레이시아, 페루, 루마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태국의 관련 법률들이 이에 해당한다.

47) 벨기에, 이집트, 인도,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러시아, 싱가포르, 핀란드의 관련 법률들이 이에 해당한다. 핀란드 중재법(제8조)의 경우에는 국적 대신 “핀란드 시민권자가 아닌 자도 핀란드 내에서 중재인으로 활동하는데 제한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법률들과 차이를 보인다.



### 3. 국제중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검토

#### (1) 독립성과 공정성의 기본원칙

사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법원의 판사가 아닌 제3자에게 맡겨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중재제도에 있어 중재인은 중재절차를 이끌어 나가며 중재판정을 내리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즉, 중재인이 판정자로서 그 역할과 자세에 충실하지 못하면 분쟁당사자들은 그 결정에 불만을 품고 승복을 하지 않을 것이다. 즉, 중재인에 대해서도 법원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impartiality) 독립적(independent)이며 중립적(neutral)이어야 한다고 본다.

중재인이 차지하는 이러한 핵심적인 지위로부터 당사자들은 중재인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하여 정당한 중재판정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중재인에 대해서도 법원과 마찬가지로 공정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각국의 중재법뿐 아니라 국제기구의 중재규칙 등에도 반영되어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중재법 역시 제13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로 하여금 중재인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sup>50)</sup>

따라서 독립성과 공정성은 상호적인 개념은 아니다. 중재인이 일방 당사자와 어떠한 관련성이나 재정적인 관계가 없다는 의미에서 독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이것이 공정하다고는 볼 수 없다. 중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국제중재인들을 위한 국제변호사협회 윤리장전(International Bar Association's Ethics for International Arbitrators)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sup>51)</sup>

#### (2) 중재인의 독립성·공정성에 우려 사항

중재의 장점은 해당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재인은 법관과는 달리 변호사로서, 교수로서, 기업가로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활동하고 직업상 불가피하게 중재 관련자들과 연관될 수 있는데, 중재법이나 중재규칙은 모든 중재인들이 당사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고 공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중재절차에서 어떤 중재인이 당사자로부터 독립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가끔 제기된다.<sup>52)</sup>

48) 이집트 중재법 제16조 제2항.

49) 안건형, 앞의 논문, p.60.

50) 정선주, “중재인에 대한 기피”, 중재연구, 제17권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7.7, p.34.

51) 이 윤리장령은 “중재인은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면서 중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포함하고 있다. 즉, 편파성은 중재인이 당사자 일방을 편애하거나 분쟁 대상에 관하여 편견을 가진 경우에 발생하고 비독립성은 중재인과 일방 당사자 또는 중재인과 일방 당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간의 관계로부터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직·간접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영업적 관계, 심각한 사회적 또는 직업적 관계, 분쟁대상과의 과거 관련성도 편파성과 비독립성의 잠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목영준, “중재인의 권한, 책임 및 면책”, 『중재논총』, 중재 02-02, 대한상사중재원, 2002, p.304.; 김경배, 앞의 논문, p.33)

일반적으로 중재인은 법관과는 달리 어느 정도 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관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에 담겨져 있는 공서양속의 정신은 당사자를 초월한 이해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재합의의 당사자 자체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를 초월하여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는 법관에 대한 중립성 요구와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sup>53)</sup>

또한, 각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은 중재인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중재인은 중재 당사자들로부터 독립하여야 하고(ICC 규칙 제7조 제1항), 중재의 결과에 고나하여 법률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중재인이 될 수 없다.(국내중재규칙 제19조). 선정의 통지를 받은 중재인은 그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관하여 정당한 의문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이를 모두 사무국에 고지하여야 한다(국내중재규칙 제25조, 중재법 제13조 제1항). 또한 비록 제1차 심문의 개시 후라 하더라도 중재절차 진행 중 중재인의 공정성 내지 독립성에 관하여 정당한 의문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사유가 새로이 발생하였다면 당해 중재인으로서는 즉시 이와 같은 사유를 당사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2003다21995판결)<sup>54)</sup>

만약, 중재절차 중 중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당사자는 중재법원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가 그 여부를 결정하는데 해당 중재인은 기피신청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을 당하였다고 해서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중재인 기피신청 제도의 취지 자체가 몰각되기 때문이다. 당사자의 기피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중재법원이 특정중재인에 대한 독립성과 공정성이 없다는 결정을 하면 해당사건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sup>55)</sup>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선택에 따라 구성되거나,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공정성과 독립성의 판단기준은 IBA Guidelines on Conflicts of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국제변호사협회 제정 국제중재에서의 이해충돌 가이드라인)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Red List, Orange List, Green List 세 종류가 있고, Red List 중에도 중재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이해 충돌적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면 넘어갈 수 있는 것(Waivable), 당사자가 동의하여도 넘어갈 수 없는 것(Non-Waivable Red List, Waivable Red List, Orange List 3가지에 속하는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중재인으로 위탁될 때나 또

52) 윤병철, 앞의 논문, pp.92-95.

53) 예컨대, 중재인의 서명의무위반이 기피사유가 되는가에 대해 독일연방대법원은 법관의 경우와는 달리 중재판정 후 이를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로 삼은 데 대해 서명의무 위반 자체는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BGHZ 141, 90.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중재판정이 행해진 후이기 때문에 독일 연방대법원이 법적 안정성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내린 판단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Kröll, Die Ablehnung eines Schiedsrichters nach deutschem Recht, ZJP 116(2003), S. 208.)(정선주, 앞의 논문, pp.37-39).

54) 윤병철, 앞의 논문, pp.92-95.

55) 김연호, “국제중재인의 교육 및 양성방안”, 중재 제339호, 대한상사중재원, 2013, p.9.

는 중재가 종료될 때까지 반드시 공개(Disclosure)하여야 한다.(Green List에 속한 사항은 면제). 만일 이를 어기고 중재인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피신청을 받거나 ICC 국제중재법원에 의해 퇴출되고 또는 당해 중재인에 의한 중재판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근거가 되거나 심지어는 패소한 중재당사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다.<sup>56)</sup>

중재인들이 해당 중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국제중재의 근본 작동원리이다. 공정성 및 독립성에 관한 중재인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현행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0조 제2항은 “중재인으로 선정된 자는 선정을 수락하기에 앞서, 자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하여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사무국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중재절차 진행 중이라도 그러한 의심을 야기할만한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면 중재인은 이를 당사자와 사무국에 서면으로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재인은 공정성 및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일으킬만한 사유가 있다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에 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고, 본인 스스로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무국에 고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sup>57)</sup> 따라서 모든 사건에서 중재인들은 그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 경제적 관련, 직업관계 등의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sup>58)</sup>

요컨대, 중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개념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또 그 구분이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물론 공정성은 독립성에 비해 중재인의 성향 등과 관련되어 있어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점에서, 또 독립성은 중재인이 당사자 그 누구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서는 안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독립성의 판단에도 주관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를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또한 그러한 분리가 기피사유를 인정하는 데 현실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지는 의문이다. 예컨대, 중재인이 전혀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시킨다고 당사자가 확신하는 경우에는 비록 당해 중재인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기피신청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재인의 독립성을 얘기할 때는 누구로부터의 독립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당사자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대리인까지 포함시켜야 한다.<sup>59)</sup>

56) 김연호, 위의 논문, p.5.

57) 김홍중, “중재인 선정에 관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개정에 관하여”, 중재, 제343호, 대한상사중재원, 2015, p.17.

58) M. Smith, “Impartiality and the party-appointed arbitrator”, 1990, Arb Int. 320.

59) 중재인의 독립성을 당사자와 사회로부터의 독립성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견해로는 이명우, “중재인의 기피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13권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3.8, p.408.

### (3) 각국의 중재법상의 독립성과 공정성

우리나라의 중재법을 비롯한 각국의 국제규칙에서 중재법이나 중재규칙에서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sup>60)</sup>

#### 1) 우리나라

우리나라 중재법에서는 중재인의 선정을 요청받은 자 또는 선정된 중재인은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sup>61)</sup>

#### 2) 영국

영국 대법원은 중재의 피신청인인 철도회사의 주주가 중재인으로 선정된 경우 중재인의 자격에 흠결사항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 중재판정을 취소하였다.<sup>62)</sup> 또한 *Veritas Shipping Corporation v. Anglo-Canadian Cement LTD.*(1966)사건에서 중재인은 중재당사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함으로 분쟁발생 당시 중재당사자인 회사의 관리이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회사를 대표하여 상대방 당사자와 의견을 교환하였다면 그는 일방 당사자와 밀접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者라는 이유로 그를 중재인의 직무에서 배제하였다. 이 사건은 당사자가 직접 선정한 중재인으로 구성하였다. 영국 법원은 이와 같이 일방 당사자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직접 선정한 방식이라 하더라도 편파성과 비독립성이 인정되어 중재인을 배척하였다.<sup>63)</sup> 그러므로 중재인은 어느 일방 당사자를 옹호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64)</sup>

#### 3) 프랑스

프랑스 법원은 과거에 당사자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중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5년 전에 모회사의 법률고문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당사자에 의하여 중재인으로 선정된 사건에서 과거의 경제적 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거부 신청을 인정하였다.<sup>65)</sup>

#### 4) 미국

미국중재협회(AAA) 국제중재규칙에 따르면, 절차를 수행하는 중재인은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sup>66)</sup> 중재절차의 과정 중에 그러한 의심을 야기할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

60) 이하, 김경배, 앞의 논문, pp.33-34.

61) 한국중재법 제13조 제1항.

62) *Sellar v. Highland Railway Company*(1919 56 S.C.L.R. 216 H)

63)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2000, p.106.

64) LCIA 중재규칙 제5조 2항.

65) 김경배, 앞의 책, p.262.

는 경우 중재인은 지체 없이 당사자들과 관리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중재인 또는 당사자로 부터 그러한 정보를 수령한 경우 관리자는 다른 당사자들과 중재판정부에 이를 알려야 한다.<sup>67)</sup>

### 5) 일본

일본중재법은 법원은 중재인 선임에 있어서 선임된 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고려되어야 하고 중재규칙은 중재절차를 수행하는 모든 중재인은 당사자에 대해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하한다고 되어 있다.

### 6) 싱가포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중재규칙은 모델법 보다는 ICC 중재규칙에 더 가까운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재인의 선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68)</sup>

### 7) UNCITRAL

UNCITRAL 중재규칙에서는 중재인을 선임함에 있어 중재인선정권자는 독립적으로 공정한 중재인선정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고려를 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자의 국적 이외의 국적을 가진 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함에 있어서는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69)</sup>

### 8) ICC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규칙은 모든 중재인은 그 중재에 관련된 당사자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중재인으로 선정될 후보자는 중재법원의 선정이나 확인이 있기 이전에 독립성 진술에 대해 서명하고 당사자의 시각에서 중재인의 독립성에 관하여 의혹을 야기할 만한 성질의 모든 사실 또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재법원의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70)</sup>

66) AAA 국제중재규칙 제7조 제1항.

67) AAA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Art. 7.

68) 백윤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상 중재인의 선정과 권한에 관한 소고", 중재, 제318호, 대한상사중재원, 2005, p.9.

69) UNCITRAL 중재규칙 제6조 제4항.

70) ICC 중재규칙 제7조 제1, 2항.

#### 4. 중재인의 전문성

국제중재를 맡을 중재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은 관련 중재법과 관습에 대한 경험이다. 특히 단독중재인이나 의장중재인의 경우 이러한 요건은 더욱 중요하다. 중재경험에는 관리능력과 국제적 마인드(international mindedness)를 갖춘 국제중재경험이 포함되어야 한다.<sup>71)</sup> 왜냐하면 어떤 사건에 대한 중재인의 접근방식이 지나치게 편협하거나 맹목적인 경우에 국제중재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손해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재법원은 통상 중재인 선정시 그가 국제중재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중재법원은 이를 엄격하고 절대적인 요건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동 법원은 중재에 대한 사전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당사자가 지명한 중재인의 확인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중재판정부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고, 그 가운데 2인의 중재인이 모두 국제중재나 ICC 중재경험이 없다면, 중재법원은 이러한 경험을 갖춘 의장중재인을 선정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중재인의 연령이나 건강 등 신체적 요건 뿐만아니라, 이메일의 활용과 같은 통신수단의 습득능력도 중재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이메일 활용의 경우에 중재법원은 아직 이에 관한 어떤 요건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중재인의 연령에 있어서는 일부 ICC 국내위원회에서 적법한 요건이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ICC중재의 경우 중재법원은 이에 관하여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sup>72)</sup>

#### 5. 국제중재인의 역할

법률가이든, 특정 거래의 전문가이든간에 분쟁해결자로서의 중재인의 역할은 법원의 법관임과 동시에 마을의 분쟁을 듣고 조언하면서 해결해주는 촌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재인은 발생한 법적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분쟁당사자들이 향후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활동이 바로 좋은 중재인의 역할임과 동시에 법적지위라고 볼 수 있다<sup>73)</sup>.

사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법원의 판사가 아닌 제3자에게 맡겨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중재제도에 있어 중재인은 중재절차 상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좋은 중재는 좋은 중재인이다”라는 말처럼 중재의 성공여부는 중재인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다. 즉, 중재인이 판정자로서 그 역할과 자세에 충실하지 못하면 분쟁당사자들은 그 결정에 불만을 품고 승복을

71) Lalive, "On the Neutrality of the Arbitrator and the Place of Arbitration," Swiss Essays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Schulthess, 1984, pp.23-28.

72) 오원석, 김용일, "ICC仲裁에서 仲裁人 選定과 確認에 관한 研究", 중재연구, 제17권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7.8, pp.29-30.

73) 이주원, "남북상사중재에 있어 중재인 선정방식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8권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8.3. p.151.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중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신속성과 저렴한 비용, 중재인의 전문성 등에 해가 될 수 있다. 이렇듯 중재제도에 있어서 중재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sup>74)</sup>

실무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사건에서 중재인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중재인 자신이 중재합의 및 사건내용을 검토하고 취임수락을 한 후 심문절차를 진행하다가 심리를 종결한 후 중재조항이 효력이 없다는 일방당사자의 항변을 받아들여 각하하는 경우이다. 이는 법원의 소송에서는 가능한 일이나, 중재에서는 중재조항의 형태가 아주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그 특성상 맞지 않는다. 두 번째 유형은 중재인이 유사사건에서 대법원의 판례가 어떻게 났으니까 중재에서도 그렇게 판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소송에서는 당연히 대법원의 판례를 따라야 하겠지만, 중재에서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중재는 각 사건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른 판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재판에서는 엄격한 증거주의에 의하여 판결이 내려져야 하지만 중재에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의하여 증거를 채택할 수가 있으므로 사실에 입각한 판정을 내릴 수가 있다.<sup>75)</sup>

그러므로 중재인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중재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방인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모든 국제상사 중재는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를 기초로 하고 있지만, 중재인들은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중재합의의 준거법이나 준거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중재인의 권리와 의무를 중심으로 중재인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sup>76)</sup>

### (1) 중재인들에 대한 권고

중재인들은 주어진 권한하에서 자신의 권한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항상 중재합의와 절차에 관한 규칙, 관련법규를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2) 이상의 근거를 통하여 제시된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묵시적 권한, 재량권, 고유권한을 바탕으로 행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지의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가) 묵시권한(Implied Power): 중재인들은 당사자들의 합의문서의 텍스트나 중재를 규율하는 다른 근거들에 대해 조사해서 그러한 텍스트에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74) 김경배,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8권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8.3, p.32.

75) 신군재,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인선정 방식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9권3호, 한국중재학회, 2009.12, pp.145-146.

76) 박영길, “2014년 ILA 76차 격년회의에서 논의된 중재인의 권한”, 중재, 제342호, 대한상사중재원, 2014, pp.31-37.

- (나) 재량권(Discretionary Power): 중재인들은 제기된 문제가 반대되는 지시(contrary instructuon)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재량권을 갖고 다룰 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인지의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 (다) 고유권한(Inherent Power): 중재인들은 그들 앞에 주어진 문제가 그들의 관할권을 훼손시키거나 중재절차의 통일성을 저해하거나 그들의 당사자들에게 집행가능성이 없는 판정을 내리게 하는 등의 위험을 무릅쓰게 될지의 여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3) 당사자 자치(party autonomy)를 적절히 존중하는데 있어, 중재인들은 먼저 자신이 행할 수 있는 묵시적 권한(implied power)이 있는지, 다음으로 재량권(discretion)을 행사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고유권한(inherent power)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를 순차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가) 중재인들은 권한이 한 가지 이상의 유형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 판정부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좀 더 편안함을 느껴야 한다.
- 나) 중재인들은 고유권한(inherent powers)을 기준으로 행위하는 것보다 묵시권한(implied)이나 재량권(discretionary)을 기준으로 행위할 때 더 안전함을 느껴야 한다.
- 다) 중재인들이 그들의 고유권한(inherent authority)만을 근거로 행위할 때에는, 관할권을 보존하고 중재절차의 통일성을 유지하거나, 집행 가능한 판정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를 스스로 충족 시켜야 한다.

(4) 중재인들은 묵시적 권한, 재량권, 고유권한을 행사할 경우 그 판단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는데, 위 권한들을 신중하고 사려 깊게 행사함으로써 추후 판정문의 집행 또는 취소 절차에서 문제 발생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궁극적으로 국제중재인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재인간, 당사자 간에 의사소통의 면에 있어서도 긍정적이고 소통이 원활한 자세를 지녀야 한다.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주장을 통하여 당사자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능력이야말로 국제중재인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의 하나가 된다. 특히 국제중재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각기 다른 국가에 속하고 다른 사회적, 법률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재인의 의사소통 방식은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는 당사자 중심의 의사소통이어야 하는 것이다.<sup>77)</sup>

또한 중재인은 중재합의에 따라 법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데, 중재인의 분쟁해결자로서의 지위는 법원의 법관과 분쟁해결 전문가로서

77) 백윤재, “국제중재인의 바람직한 자세”, 중재, 제339호, 대한상사중재원, 2013, pp.16-17.



의 지위가 결합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재인은 엄격한 증거와 소송절차에 의거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판사의 직분과 상식과 전문성에 기초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원로 같은 전문가적 직분의 결합선상에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제중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분쟁은 대부분 기업 간 경제적인 문제로 야기된 분쟁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미래적으로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국제중재는 국적을 달리하고 있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및 문화적 갈등이 존재하게 되며, 그래서 신청단계에서 증거조사, 문서제출, 증인신문 등의 절차에서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국제중재인은 자신이 대륙법 체계나 영미법 체계에 속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당해 분쟁의 준거법에 따라 윤리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중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중재인 상호간에 허심탄회한 협의 과정을 거쳐 중재판정을 내린다면 중재판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비록 당사자 지명의 중재인이라고 할지라도 사심 없는 협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자세와 마음이 진정 국제중재인의 역할이라고 할 것이다.<sup>78)</sup>

### Ⅲ. 국제중재인의 양성방안

국제상사분쟁에서 당사자들이 중재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는 중재절차의 신속성과 경제성, 비공개성 외에도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한 유능하고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중재의 성패는 그 중재인의 역량에 좌우된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sup>79)</sup>

이미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정보통신기술과 제반인프라, 동북아 지역의 양대 경제중심인 일본과 중국 사이의 중심국가로서의 지정학적인 이점, 한류의 확산 등을 통하여 제고된 국제사회에서의 지명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중재전문가들을 잘 홍보하고 활용함과 동시에, 우리기업들이 국제거래와 관련한 분쟁해결 조항의 협상에 있어서 보다 자신 있게 서울을 중재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나아가 외국 당사자들이나 중재전문가들이 서울을 중재지로 하는데 선뜻 동의하도록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중재법과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중재에 대한 자세가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sup>80)</sup> 그러나 국제중재의 중심지로 우리나라가 선택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제중재인으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유능한 국제중재인이 요구된다. 따라서 몇 가지 국제중재인의 양성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78) 백운재, 위의 논문, pp.16-17.

79) 오원석·김용일, 앞의 논문 p.39.

80) 신희택, “국제중재발전을 위한 제언”, 중재, 제341호, 대한상사중재원, 2014, p.4.

## 1. 다국적인 중재인 풀의 확충

국제중재에 있어 중재인의 우수성과 전문성이 한층 더 요구된다. 현재의 우리의 중재인 명부에도 많은 우수한 국제중재전문가들이 있지만 앞으로 경험이 있고 언어능력, 국내외 법규, 상관습, 문화적응력에 우수한 국제중재전문가들을 많이 초빙하여 당사자들의 선택가능성과 폭을 넓여 주어야 한다. 소수그룹에게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도록 배려하고 국제중재인들 사이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대규모의 국제중재 세미나 등도 중요하지만 소규모이면서도 국제중재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우수한 국제중재기관과의 인적교류와 유치를 통하여 다국적이고 다변화된 국제중재인의 확충에 투자와 지원이 요구 된다고 본다.<sup>81)</sup>

## 2. 중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 강화

국제중재에서는 중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중재를 하나의 비즈니스 차원에서만 생각하였다. 즉 한국기업들이 이런 저런 국제중재사건의 당사자가 되었고 어느 로펌이 특정 대형사건의 대리인이 되었으며 국제중재 사건유치를 위해 많은 외국로펌들이 한국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등 정도로 국제중재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중재에서는 국내법원의 판사들에 대한 것보다 더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한 윤리적 기준은 ‘국제중재 이익충돌에 관한 가이드라인’(IBA: Guidelines on Conflicts of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을 통해 확보되는데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복잡하므로 자칫 지나치고 넘어가는 수가 많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제중재인의 교육과정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해석과 적용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나 개인이 당사자가 된 국제중재사건에서 위 가이드라인의 준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타국의 국제중재인들의 시각에서 볼 것 같으면 용납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중재가 국제중재 중심지로부터 보편성을 획득하려면 우선 중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교육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sup>82)</sup>

81) 김연호, 앞의 논문, “국제중재규칙의 활용방안과 한국의 국제중재제도의 발전”, 중재, 제336호, 대한상사중재원, 2011, p.13.

82) 김연호, 앞의 논문, “국제중재인의 교육 및 양성방안”, 중재, 제339호, 대한상사중재원, p.9.

### 3. 국내의 국제중재법규에 대한 연구 및 교육 필요

외국당사자들이 한국에서의 국제중재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그들에게 낮은 땅이기 때문이 아니다. 한국에서 국제중재를 진행한다면 중재지(Place of Arbitration)가 한국이므로 한국의 중재관련 법규가 적용되고 여기에는 그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법규들이 있어 결국 불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본다. 한국의 중재관련 법규들은 UNCITRAL 모델법을 참조하는 등 많은 변화를 하였고 국제중재 표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아직 충분치 못하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국제중재인의 교육을 활성화하려면 ICC 중재규칙 등 주요 중재기관의 중재규칙도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국제중재기관들의 중재규칙을 교육한다고 할 때에 유의할 점은 각 중재기관마다 특이한 규칙이 있고 이러한 중재규칙들이 어떤 측면에서 실제 중재사건을 통해 효력을 발휘 하는가 등 심층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중재인의 교육프로그램에서도 국내의 중재관련법규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철저히 하여 중재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sup>83)</sup>

### 4. 국제중재 강사들의 지위 제고

국제중재인 교육을 강화하려면 우선 강사들이 좋아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국내에서 국제중재 교육을 진행함에 가장 큰 걸림돌은 적절한 강사를 많이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일 것이다. ICC중재인 전문교육과정에서는 강사마다 국제중재사건의 중재인 및 대리인으로서 수백 내지 수십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는 중재인들이었다. 또한 강사들의 열성적이고 개인 체험담 사례에 관련된 교육을 심층적으로 유익하게 설명해 주었고, 강사들이 자기 실력이나 경험을 포장하거나 숨기려는 모습은 전혀 발견할 수 겸손하고 실질적으로 강의가 이루어 졌다. 한 예로 한 중국변호사는 자국에서의 국제중재 중재인과 대리인간의 상호행동 양태를 설명하면서 ICC의 엄격한 중재인 윤리적 의무에 대해 재차 강조하였고, 국제중재에 있어 엄중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닌 중재인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다시한번 강조하였다. 국내에서 국제중재인의 교육을 내실화하려면 우선 국제중재인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의 지위를 제고하여 진정으로 국제중재제도의 활성화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세와 인식을 지닌 강사들에 의하여 집중적이고 실무적인 교육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본다.<sup>84)</sup>

83) 정준영, “민사사건에서의 중재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중재, 제323호, 대한상사중재원, p.31.

84) 김연호, 앞의 논문, “국제중재인의 교육 및 양성방안”, 중재, 제339호, 대한상사중재원, pp.9-11.

## 5. 국제중재 인력의 다변화

교육과는 별개이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우리나라에서 국제중재인을 잘 양성 하기 위해서는 국제중재 인력을 다변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중재의 당사자인 국내기업들이 대체로 대기업이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국제중재 인력이 국내에서는 수개의 로펌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이다. 엉뚱하게도 국내법조인구조의 독특성으로 인해 당사자선정 중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강한 의구심이 유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일례로 한 유명 국제중재인은 중재인의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랫동안 일하던 로펌을 떠나 단독 개인 법률 사무소는 열었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중재기관과 관련기관들이 조정·중재 기법과 합리적인 운용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춘 유능한 국제중재인을 다양한 지역에서 발굴하고 확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본다.<sup>85)</sup>

## 6. 분야별 전문중재인 및 상임중재인 확보

국제거래의 다양화로 인하여 분쟁유형도 다각화되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분쟁유형에 따라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분야별로 국제중재인의 육성이 필요하고, 나머지 하나는 상임중재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먼저 중재원은 전문화되고 있는 각 분야의 요구에 맞추어 더욱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적재산권법의 영역에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소프트웨어, 영업비밀, 문화콘텐츠, 스포츠나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며, 구체적으로 특허만 보더라도 전자, 전기, 기계, 생명공학 등과 환경분야에도 대기, 토지, 수질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어, 상임중재인을 도입하는 것인데, 현행과 같이 비상임 중재인을 두는 것도 충분한 의미가 있지만, 중재에 있어서 상임중재인 제도의 도입은 더욱 고도화된 전문성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중재가 진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일관성이 있는 기준의 제시와 중재의 예측 가능성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중재판정의 특수성 때문에 법원의 홈페이지나 판례집 등을 통하여 공표되어 버리는 것을 우려하는 기업들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송에 의한 절차를 채택하는 것을 기피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분쟁 해결과정상 비공개성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는 중재의 이용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 국제중재인을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sup>86)</sup>

85) 김연호, 위의 논문, p.11.

86) 윤선희,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 중재, 제330호, 대한상사중재원, 2009, p.5.

## IV. 결 론

국제중재인은 충분한 당사자 의견 경청과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국제중재인으로서의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고도의 책임과 의무가 요구되고, 나아가 국제중재인의 자격과 역할이 중재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본다.

국제중재제도에서 중재인의 자격과 역할에서 공정성 및 독립성 보장은 중재제도의 신뢰도와 활용도를 증진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본원칙이라고 본다. 그러나, 국제중재 판정사례들을 보면, 중재규칙이나 윤리강령에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되는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중재인은 원활하게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공평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 하면서 중재판정을 내릴 권리와 의무와 국제중재인 상호간 상이한 문화와 법률 체계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동하고 나아가 윤리적인 의무를 다해야 만이 중재판정의 독립성, 공정성과 타당성을 향상시켜 국제중재인의 자격과 역할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이에, 국제상사중재를 다루는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은 그 고유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당사자들 간의 유효한 합의를 통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판정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중재인은 그 직무상 성격에 비추어 주의의무, 성실의무 및 비밀 준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는 국제상사분쟁의 해결방안을 합리적으로 모색하여 신속·공정한 해결을 바라는 중재판정부의 분쟁처리 과정에 중립성 견지, 절차의 비공개원칙과 분쟁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절차참여 유도, 의사결정의 존중과 변호사 역할의 축소 등의 국제중재 특징을 살려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로서의 역할을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여러 법적·제도적 장치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법·제도적 규정에 앞서 국제중재인은 그가 사법적 판단자의 위치에 있음을 인식하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인식고취와 윤리적 의식과 책임감으로 직무상 의무를 준수하고 우리나라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국제중재인의 윤리강령을 신속 하에 제정하여 국제중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중재기관이 국제중재기관으로 공정한 판정을 내려 준다는 인식과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관련 학연관 상호 연구와 협력이 요구 된다고 본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중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제중재를 처리할 수 있는 국제중재인에 대한 교육강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는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의 중재허브국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양질의 국제중재인들이 양성·교육되어 있지 않다면 중재허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 또한 중재

이론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분쟁사례 연구와 발굴에 중점을 두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국제중재인 양성교육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중재인의 자격과 효율적인 양성방안으로는 우선, 국제중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다양한 사례분석과 윤리적 교육강화, 국내 및 국제중재관련 법규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 교육 필요, 국제중재인 인력풀 다국적성 및 다변화 추구, 대학 및 국제중재인 전문양성 과정 설치 및 지원을 강화, 국제중재인 교육 내실화를 위한 강사 지위와 자질 제고, 국제중재인 양성교육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및 유관기관 협조관계 구축과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분쟁분야 국제중재인 양성과 상설중재인 제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국제중재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우선 축적된 우수 중재전문가의 자원을 활용하여 투명하고 국제적 중재정합성을 가진 국제수준의 중재시스템을 당사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예측가능한 중재판정의 환경 하에서 신속하고, 전문화된 국제중재에서의 보편적 가치인 투명성이 보장될 때에 우리나라의 국제중재도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국제중재의 허브국가로 크게 발전·기여할 것으로 본다.<sup>87)</sup>

다만, 본고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국제중재인의 자격, 역할 등에 관련된 각국의 입법사례에 대한 비교연구 등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과제로 남기도록 한다.

## 참고문헌

- 강이수 외, 「국제거래분쟁론」, 삼영사, 2010.
- 김경배, 「국제무역분쟁과 ADR」, 무역경영사, 2005.
- 김경배,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8권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8.3.
- 김연호, “국제중재인의 교육 및 양성방안, 중재”, 제339호, 대한상사중재원.
- 김연호, “국제중재규칙의 활용방안과 한국의 국제중재제도의 발전”, 중재, 제336호, 대한상사중재원, 2011.
- 김용일·하명근,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인 선정에 관한 비교연구”, 통상정보연구, 제8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6.
- 김홍중, “중재인 선정에 관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개정에 관하여”, 중재, 제343호, 대한상사중재원, 2015.

87) 지난 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사중재원, 서울시와 법무부가 협력하여 ‘서울국제중재센터’를 설립하여 국제중재업무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 목영준, “중재인의 권한, 책임 및 면책”, 「중재논총」, 중재 02-02, 대한상사중재원, 2002.
-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2000.
- 박영길, “2014년 ILA 76차 격년회의에서 논의된 중재인의 권한”, 중재, 제342호, 대한상사중재원, 2014.
- 박종삼 외, 「최신상사중재론」, 대한중재인협회, 2001.12.
- 백윤재, “국제중재인의 바람직한 자세”, 중재, 제339호, 대한상사중재원, 2013.
- 신군재,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인선정 방식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9권3호, 한국중재학회, 2009.12.
- 신희택, “국제중재발전을 위한 제언”, 중재, 제341호, 대한상사중재원, 2014.
- 윤병철, 국제중재에서 중재인의 선임, 중재, 제319호, 대한상사중재원, 2006.
- 안건형, “비번호인 중재인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재연구, 제25권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5.3.
- 이명우, “중재인의 기피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13권제2호, 한국중재학회.
- 오원석, 김용일, “ICC仲裁에서 仲裁人 選定과 確認에 관한 研究”, 중재연구, 제17권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7.8.
- 이주원, “남북상사중재에 있어 중재인 선정방식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8권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8.3.
- 윤선희,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 중재, 제330호, 대한상사중재원, 2009.
- 정선주, “중재인에 대한 기피”, 중재연구, 제17권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7.7.
- 정준영, “민사사건에서의 중재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중재, 제323호, 대한상사중재원.
- 홍성규, 「국제상사중재」, 두남출판사, 2004.
- Alan Redfern, Martin Hunter,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London: Sweet & Maxwell, 2nd ed., 1991.
- A. de Fina, “*The party appointed arbitrator in international arbitrations-role and selection*”, 1990 15 Arb. Int.
- Elizabeth Champnoi, “*The Arbitrator Selection Process and New Ethical Standards*”, The CPA Journal, December 2005.
- Houtte, H. V.,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Sweet & Maxwell, 2002.
- Kröll, Die Ablehnung eines Schiedsrichters nach deutschem Recht, ZZP 116(2003), S. 208.
- M. Smith, “*Impartiality and the party-appointed arbitrator*”, 1990, Arb Int.
- Lalive, “*On the Neutrality of the Arbitrator and the Place of Arbitration*,” Swiss Essays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Schulthess, 1984.
- Martin Domke, Domke on Commercial Arbitration, The Law and Practice of Commercial Arbitration, Callaghan & Company, 1984.

Sellar v. Highland Railway Company 1919 56 S.C.L.R. 216 H.

Vicente Marotta Rangel, *"Brazil,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Vol.III. ed. Pieter Sanders, International Council for Commercial Arbitration, Kluwer, 1978.

Wendy Miles, *"Practical Issues for Appointment of Arbitrators-Lawyer vs Non-Lawyer and Sole Arbitrators vs Panel of Three(or More)"*, Journal of Arbitration, Vol.20, No.3, 2003.

Wendy Miles. *"International Arbitrator Appointment"*, Dispute Resolution Journal, August/October, 2002.

\* 제반 관련 국내외 법규 및 인터넷 사이트 참조.



## ABSTRACT

### Study on Qualification and Training Plans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or

Jong-Sam Park

That the arbitration will begin with an arbitrator to be done by the arbitrator is not too much to say. The arbitrator shall have a decisive influence on the outcome of an arbitration in any arbitral right to award arbitration. As demonstrated in sayings like "Good arbitration is a good arbitrator" and "Arbitration is as arbitrator", professionalism and fairness are the basis for the arbitration procedure.

Parties qualifications and authority of the arbitrator shall be a dispute-resolution process, requiring special attention and special care because the careful review of the arbitration award itself exert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election of an arbitrator.

Therefore, this paper, first, analyzes the meaning of international arbitrators as a general over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ors, qualifications, etc. and looks for focuses of the role. Nex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ek ways to expand trade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by examining training plans such as for international arbitrators.

**Key Words** : Arbitration, the International Arbitrator, Arbitration Qualification, Arbitration Training Plans.